

가천음악연구소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가천음악연구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가천음악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한다)라 부른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.

제 2 장 사 업

제4조(연구소의 목적) 본 연구소는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의 역사와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, 수정과 보완을 거쳐 새로운 음악문화의 방향을 제시하여 한국 음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5조(연구소의 사업)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음악 분야의 종합적 연구 및 지원
2. 한국 창작음악 연주 및 한국 작곡가 연구
3. 대학 교과과정 및 전공과목에 대한 개선책 연구
4. 국제화 시대를 겨냥한 개설학과의 다양화 및 취업진로 연구
5. 음악 조기교육의 새로운 제시와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
6. 악보와 음악자료 등 한국 현대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
7. 학술지, 작품집 및 CD 등의 발간
8. 연구원의 연구, 창작, 학술활동의 실질 지원
9.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 및 연주교류
10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사업

제 3 장 조 직

제6조(구성) 본 연구소에는 소장, 총무부장, 기획부장, 연구부장, 연주부장 및

5-1-6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감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 부에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자격 및 임명) ①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②각 부장 및 연구위원은 본교 음악대학 전임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③감사는 전임교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④연구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본교 연구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직무와 임기) ①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수립하고 업무활동을 관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연구위원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9조(후원회) 본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설치)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1조(조직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은 본 연구소의 각 부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2조(권한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사업의 운영방안 선정
2. 예산안의 승인
3. 업무 및 결산 보고
4. 제규정의 개폐
5.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
6.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3조(소집과 회의)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결정한다.

제14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써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5조(회의록)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의안에 찬성한 위원이 날인한다.

제 5 장 재 정

제16조(경비 및 연구비)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교비지원금, 공공기관 지원금, 연구사업 수입, 후원회비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7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년도와 일치한다.

부 칙

①(운영세칙)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